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045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25,154원 및 그 중 26,052,335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1. 3. 25.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4. B와 사이에, B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 부채채무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36,000,000원, 보증기한 2022. 12. 14.,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4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 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책임경영이행 약정서(신규보증용)

이 약정서에 의한 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제1조 표시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약정인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인: A

신용보증의뢰인(보증기업): 주식회사 B

약정인은 신용보증의뢰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조 표시 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으로 입보하지 않으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잔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의뢰인에 대한 책임경영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신용보증의뢰인:

2. 보증약정:

3. 신용보증원금(한도금액): 금 원

4. 신용보증기간: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4. 재단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과 약정인의 책임)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재단에서 제2조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과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하면 약정인은 즉시 회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책임경영의무위반이 아닌 것으로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제1호의 책임경영의무위반 발생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약정인이 신고한 주소로 재단이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② 보증의뢰인이 제1항에서 정하는 회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약정인에게 연대보증인 입보를 결정하는 경우에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B는 2018. 12. 14.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B가 2020. 10. 14.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12. 16. C은행에 대출원리금 26,413,815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361,480원을 회수, 총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6,052,335원이고, 여기에 법적절차비용 1,072,720원, 확정손해금 99원을 더한 금원은 27,125,154원이고, 연체이율은 2018. 2. 1.부터 연 10%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6호증, 9호증, 10호증, 12호증,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기업운영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4호, 제7호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에 따라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는, 피고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고가 B로부터 보증금액을 회수하는 데 동의하고, B로부터 보증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인 입보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고가 B와 연대하여 보증금액의 회수의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B의 파산선고로 C은행에 보증금액을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구하는 이 사건은, 구상금 채무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위반이 아닌 파산선고를 이유로 하고, 보증금액 회수의무가 아니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구할 수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은 약관이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1)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 D(피고의 처)로부터 차용하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원 등을 상환한 것이므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으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의 의미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는 표시한 문언의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약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보증의뢰인의 경영자인 약정인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대신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 한하여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 즉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사전구상하거나 대위변제 후 구상하는 금액에 관한 보증의뢰인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 B의 구상금 채무가 아니라 보증금액 회수의무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일 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신용보증제도로 원활히 자금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기업의 경영자에게 일률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방만한 회사 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기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기 위해 책임경영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 2)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 제1항은, 약정인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데 동의한다고만 되어 있으나, 회수절차와 관련한 제1호에서 원고가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면 약정인은 회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한다는 것은 결국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사전구상하거나 구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증의뢰인에 대한 것이라면 굳이 약정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약정인에게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할 이유도 없으므로, 제4조 제1항을 피고 주장처럼 보증의뢰인의 의무에 대한 약정인의 동의로만 해석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 제1항을 피고 주장처럼 해석하더라도 제4조 제2항에서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의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는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보증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을 포함한 구상금 채무를 의미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3)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는 경영자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유와 구상금채무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하지는 않고(원고의

대위변제가 2020. 11. 19. 파산선고를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경영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회수하고 약정인이 납부하여야 할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은 결국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과 함께 작성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 즉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사전구상하거나 대위변제 후 구상할 채무를 뜻한다.

4)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4조 제2항은 보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정인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보증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약정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라기보다는 원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책임경영약정서 하단의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라는 항목 옆에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는 사실, '위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항목 옆에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함께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에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특정되어 있고, 피고가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책임경영의무 위반 여부

1)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14. C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의 개인카드 경비사용분 13,749,363원, 2017년 연말정산 피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272,200원, 피고의 단기차입금 상환 2,931,500원, D(피고 처)의 단기차입금 상환 15,350,000원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호증 내지 4호증,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대출금을 재단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로 사용하여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경영개선자금)에 대한 보증이고, 대출과목이 기업운전일반자금이고, 그밖에 대출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나) B의 2018년 선수금 거래처원장에 선수금 잔액은 피고

9,300,000원(=15,235,000원-5,935,000원), D

38,045,000원(=93,130,000원-55,085,000원)인데, 피고 또는 D이 회수한 선수금에 이 사건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는 D의 선수금은 대부분 B의 사업소득, 인건비, 세금공과금, 기숙사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B의 2019년 선수금 거래처원장의 선수금 잔액은 피고 212,318,849원, D 88,635,700원, 2020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에 단기차입금은 피고 104,557,699원, D 145,837,500원에 이르러 피고는 피고 또는 D의 선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B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피고 개인카드인 E카드 11,386,997원, F카드 1,891,226원, G카드 221,260원 등도 대부분 B의 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6. 5. 28. B를 설립한 1인 주주 및 대표자로 반도체장비 관련 사업을 하였으나 설립 초기부터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높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8년경 전장사업 분야에 새로 진출하여 매출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와 경비가 그 이상 증가하여 더 큰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8년 상당한 금원을 기업운전자금으로 차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차입한 운전자금의 상황에 대부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 제2조 제7호의 위반도 주장하나, 앞서 본 제2조 제4호의 위반 내용 이외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